

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(안)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5. 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 안 사 유

-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이 '95. 1. 1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
- 동규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소방서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, 하부조직에 관한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 (안제2조)
- 소방서장 보직 및 사무규정 (안제3조)
 -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함.
 - 소방서장은 소관사무 통괄 및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
- 소방서 하부조직 규정 (안제4조)
 - 소방서 하부조직, 사무분장, 파출소 설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-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규정 (안제5조).
 -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도록 함.

3. 근거 법령 : 별첨

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 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소방서(이하 "소방서"라 한다)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방서의 명칭등) 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서장) ①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.

②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하부조직등)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관파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공무원)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)

충청북도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청 주 소 방 서	청주시 북문로 2가 116-90	청주시 일원, 청원군 일원, 보은군 일원
충 주 소 방 서	충주시 연수동 529-1	충주시 일원, 음성군 일원
제 천 소 방 서	제천시 청전동 106-4	제천시 일원, 단양군 일원
영 동 소 방 서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57-2	영동군 일원, 옥천군 일원
증 평 소 방 서	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906-3	괴산군 일원, 진천군 일원

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소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대강을 정함으로써 소방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지방소방학교

제2조(설치) 특별시, 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교장) ① 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, 교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.

② 교장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하부조직) ① 학교에 서무, 인사, 보안, 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과를 두되,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.

③ 학교의 각 과, 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소 방 서

제5조(설치) 특별시, 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.

제6조(서장) ① 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,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.

② 서장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7조(하부조직)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를 둔다.

② 과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.

③ 소방서의 과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파출소등) ①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파출소, 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.

② 소방파출소장, 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(출장소) ① 소방서장은 농공단지, 주택단지, 관광단지등 개발지역 또는 계절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등에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출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출장소는 소방파출소의 장비, 인력등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소방서의 운영등) 소방서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,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(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(별 표)

소방학교, 소방서에 두는 교장, 과장, 파출소장등의 직급
(제3조, 제7조 및 제8조 관련)

구	분	직	급
소방학교의 교장	특별시	소	방 감
	광역시, 도	소	방 정
소방서의 과장	특별시, 광역시	지	방 소 방 령
	도		지방소방령 또는 지방소방경
소방파출소장, 구조대장		지	방 소 방 위
소 방 정 대 장			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